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84
----------	-------

발의연월일 : 2026. 3. 18.

발 의 자 : 김영호 · 고민정 · 김용민
박은정 · 김문수 · 박용갑
이용우 · 문정복 · 김준환
백승아 · 강경숙 · 박해철
진선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30% 가량이 장애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전문적 지원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실제로 이러한 문제행동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원활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학생의 문제행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중재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중재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중재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 수립·실행·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둔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행동중재전문가의 자격 및 업무 범위, 제2항에 따른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8조의2(특수교육대상자 행동 중재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 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 수립 · 실행 · 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둔다.</u> <u>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 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행동중재전문 가의 자격 및 업무 범위, 제2 항에 따른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u>